

다자녀가구 자격확인 구비서류 안내

| 서류유형 | | 해당서류 | 발급기준 | 자격확인 구비서류 유의사항 |
|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|
| 필수 | 추가 | | | |
| ○ | | 주민등록표등본 | 본인 | -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|
| ○ | | 주민등록표초본 | 본인 | -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|
| ○ | | 가족관계증명서 | 본인 | 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"상세"로 발급 -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|
| ○ | | 신분증 | 본인 | 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|
| ○ | | 출입국사실증명원 | 본인 |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※ 기록대조일을 3년 전(2018.03.24) ~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3.24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|
| ○ | | 주민등록표등본 | 배우자 | -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 |
| ○ | | 복무확인서 | 본인 | - 10년 이상 장기복무근원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근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 |
| ○ | | 주민등록표초본 | 피부양자 직계존속 | -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존속포함)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3세대이상 구성 정수를 받은 경우 : 주민등록번호(및자리포함),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(3년 이상) 및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 |
| ○ | | 가족관계증명서 | 배우자 | - 이혼·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"상세"로 발급 |
| ○ | | 기본증명서 | 자녀 | -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|
| ○ | | 한부모가족증명서 | 본인 |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|
| ○ | | 혼인관계증명서 | 본인 | -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성명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|
| ○ | | 혼인관계증명서 | 자녀 | - 만18세 이상의 미혼자녀가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|
| ○ | | 임신증명서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| 본인 또는 배우자 | -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(임신진단서, 유산관련 진단서) 제출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 |
| ○ | |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| 본인 또는 배우자 | - 견본주택에 비치 |
| ○ | |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| 본인 또는 배우자 | - 입양의 경우 |
| ○ | | 출입국사실증명원 | 피부양자 존계비속 | - 3세대 이상 세대구성원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※ 기록대조일을 3년 전(2018.03.24) ~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3.24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|

※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3.24) 이후 발행분에 한함.
 ※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 ※ "상세": 주민등록(田)등·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 이력" 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반드시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 이력"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.

노부모부양 자격확인 구비서류 안내

| 서류유형 | | 해당서류 | 발급기준 | 자격확인 구비서류 유의사항 |
|------|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|
| 필수 | 추가 | | | |
| ○ | | 주민등록표등본 | 본인 | -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|
| ○ | | 주민등록표초본 | 본인 | -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|
| ○ | | 가족관계증명서 | 본인 | 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"상세"로 발급 -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|
| ○ | | 신분증 | 본인 | 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|
| ○ | | 출입국사실증명원 | 본인 |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※ 기록대조일을 3년 전(2018.03.24) ~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3.24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|
| ○ | | 주민등록표등본 | 배우자 | -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 |
| ○ | | 복무확인서 | 본인 | - 10년 이상 장기복무근원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근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 |
| ○ | | 주민등록표초본 | 피부양자 직계존속 | -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(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 발급) |
| ○ | | 주민등록표초본 | 피부양자 직계비속 | -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, 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"상세"로 발급) |
| ○ | | 가족관계증명서 | 피부양자 직계존속 | -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|
| ○ | | 가족관계증명서 | 배우자 | -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의 피부양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|
| ○ | | 가족관계증명서 | 손자녀 | -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|
| ○ | | 혼인관계증명서 | 본인 | -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"상세"로 발급) |
| ○ | | 혼인관계증명서 | 피부양자 직계비속 | - 만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"상세"로 발급) |
| ○ | | 출입국사실증명원 | 피부양자 직계존속 | -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여부 판단 시 아래의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부적격 (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 ※ 기록대조일을 3년 전(2018.03.24) ~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3.24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|
| ○ | | 출입국사실증명원 | 피부양자 직계비속 | -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(30세 미만 미혼 자녀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) (30세 이상 미혼 자녀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 ※ 기록대조일을 1년 전(2020.03.24) ~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3.24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|

※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3.24) 이후 발행분에 한함.
 ※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 ※ "상세": 주민등록(田)등·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 이력" 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반드시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 이력"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.

가점제(예비입주자) 자격확인 구비서류 안내

| 서류유형 | | 해당서류 | 발급기준 | 자격확인 구비서류 유의사항 |
|------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|
| 필수 | 추가 | | | |
| ○ | | 주민등록표등본 | 본인 | -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|
| ○ | | 주민등록표초본 | 본인 | -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|
| ○ | | 가족관계증명서 | 본인 | 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"상세"로 발급 -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|
| ○ | | 신분증 | 본인 | 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(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 |
| ○ | | 출입국사실증명원 | 본인 |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※ 기록대조일을 3년 전(2018.03.24) ~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3.24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|
| | ○ | 주민등록표등본 | 배우자 | -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 |
| | ○ | 복무확인서 | 본인 | -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 |
| | ○ | 장애인등록증 / 등본 | 해당자 | - 청약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본인 장애인(장애인등록증) 또는 만65세 이상 고령자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)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|
| | ○ | 출입국사실증명원 | 피부양자 직계존속 | -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여부 판단 시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수 제외 (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 ※ 기록대조일을 3년 전(2018.03.24) ~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3.24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|
| | ○ | 출입국사실증명원 | 피부양자 직계비속 | -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(30세 미만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) (30세 이상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 ※ 기록대조일을 1년 전(2020.03.24) ~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3.24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|
| | ○ | 주민등록표초본 | 피부양자 직계존속 | -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[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내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] |
| | ○ | 주민등록표초본 | 피부양자 직계비속 | -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[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(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] |
| | ○ | 가족관계증명서 | 피부양자 직계존속 | -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- 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|
| | ○ | 가족관계증명서 | 배우자 | -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|
| | ○ | 가족관계증명서 | 손자녀 | -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|
| | ○ | 혼인관계증명서 | 본인 | -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"상세"로 발급 |
| | ○ | 혼인관계증명서 | 직계비속 | -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"상세"로 발급 |

- 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3.24) 이후 발행분에 한함.
- ※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문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위소 및 부적격 결과는 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- ※ "상세" : 주민등록(표)등·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 이력" 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반드시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 이력"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.

추첨제 자격확인 구비서류 안내

| 서류유형 | | 해당서류 | 발급기준 | 자격확인 구비서류 유의사항 |
|------|----|-------------|------|--|
| 필수 | 추가 | | | |
| ○ | | 신분증 | 본인 | 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(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 |
| ○ | | 주민등록표등본 | 본인 | -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|
| ○ | | 주민등록표초본 | 본인 | -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|
| ○ | | 가족관계증명서 | 본인 | 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"상세"로 발급 -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|
| ○ | | 출입국사실증명원 | 본인 |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※ 기록대조일을 3년 전(2018.03.24) ~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3.24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|
| | ○ | 주민등록표등본 | 배우자 | -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 |
| | ○ | 복무확인서 | 본인 | -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 |
| | ○ | 장애인등록증 / 등본 | 해당자 | - 청약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본인 장애인(장애인등록증) 또는 만65세 이상 고령자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)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|

- 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3.24) 이후 발행분에 한함.
- ※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문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위소 및 부적격 결과는 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- ※ "상세" : 주민등록(표)등·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 이력" 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반드시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 이력"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.